

# 보도자료



보도	2023.12.19.(화) 석간	배포	2023.12.18.(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	책임자	팀 장	김은성	(02-3145-8030)
		담당자	조사역	유혜민	(02-3145-8033)
	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	책임자	부 장	이종혁	(02-3705-5326)
		담당자	과 장	서태영	(02-3705-5254)

#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

-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비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. -
- □ (추진배경)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\*받을 수 있는데,
  - \* 관련 법규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8조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
  -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(장애인 증명서 등)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,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.
- □ (은행권 현황) '23.12월 현재 18개 은행\*(수출입, 씨티 제외) 中 10개 은행 (55.6%)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,
  - \* 전체 20개 은행 中 수출입(수신기능 無) 및 씨티(소매금융 중단)
  -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中 2개(25.0%)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· 촬영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 [참고] 은행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가능여부

구분	비중	비고	
불가능	10개 은행 (55.6%)	신한 우리 하나 SC, 경남, 광주, 부산 전북 제주, 농협	
가능	8개 은행 (44.4%)	국민, 대구, 산업, 수협, 기업, 토스, 카카오, 케이	
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	6개 은행	국민, 대구, 수협, 기업, 토스, 케이	
출력·촬영 제출	2개 은행	산업, 카카오	

- □ (개선 방안)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,
  -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·전자 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,

### ※ 공공마이데이터 및 전자문서지갑 서비스

- ① (공공마이데이터)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(행안부, '21.12월 시행)
  - 금융소비자 본인이 **정보제공에 동의**하는 것으로 **절차 완료** →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를 **데이터 형태로 수신**(서류 수집 및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인력·시간 절감)
- ② (전자문서지갑) 정부24 앱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 제출 가능(행안부, '19.12월 시행)
-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**제출하는 방식**으로 운영 중인 **은행**(카카오)도 **공공마이데이터**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.
  - ※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→ 현행 비대면 접수방식 유지
- □ (추진 일정) '24.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'24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

추진 일정	은행
연내 추진	신한, 우리, 농협
'24.1월 추진	광주, 전북, 경남
'24.2월 추진	하나, 제주 <sup>*</sup>
'24.1분기 추진	SC, 부산, 카카오

<sup>\*</sup> 전자지갑방식 우선 도입후 '24년중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 전환 예정

- ※ 금감원과 은행권은 **장애인**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·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.
  - ⇒ (붙임) '23년 이후 은행권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개선 현황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# 붙 임 '23년 이후 은행권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개선 현황

### □ 거동불편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('23.4월)

- 장애·질병 등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가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을 하려는 경우, 예금주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호자(또는 대리인) 요청시 은행이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지급방안 마련
  - ※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('23.4.18.)

## [2] 성년후견인 금융거래(은행) 매뉴얼 발간('23.6월)

- 장애·질병 등으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 업무절차 ·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한 성년후견인 매뉴얼 마련
  - ※ 성년후견인,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('23.6.4.)

## ③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 매뉴얼 마련('23.6월)

- 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이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**단독으로**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식 마련
  - ※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('23.6.18.)

## [4] 은행권 모바일 뱅킹 간편(고령자) 모드 출시('23.7월)

- 국내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단순화 하고,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간편(고령자) 모드 출시
  - ※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모드를 이용해 보세요('23.7.26.)